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로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조기 완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상향 조정 (안 제3조제1항)

-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 →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40

나. “경상북도교육위원”을 “경상북도의회교육의원” 명칭 변경
(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미시교육청 학무과장”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명칭 변경(제4조 제2항제4호)

라. 보조사업의 변경·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경쟁력 제고로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조기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고
- “경상북도교육위원”을 “경상북도의회교육의원”으로 “구미시교육청 학무과장”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의 변경·취소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상향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미글로벌교육특구를 조기에 육성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